일 연계 정의 및 기준(안)

(2024.04. 기준)

□ 일 연계 정의

중장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취업·창업·기타 형태로 연계된 건

□ 일 연계 기준

구 분		세부기준	비고			
일	취업	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연계된 경우 [참고]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유형 참조	재정지원 일자리 중,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* 포함 가능			
	창업	사업자등록(개인·법인), 조합 등 정식 단체를 설립한 경우 커뮤니티·동호회 등 비공식 단체의 설립은 인정				
	기타	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나, 수입이 발생(수당 지급 등) 하는 일자리에 연계된 경우 [붙임] 기타 일자리 세부 구분표 참조	재정지원 일자리 중,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으나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** 포함 가능			

예시) *서울시 뉴딜일자리, 4050인턴십(풀타임) 등 / ** 서울시 보람일자리, 4050인턴십(파트타임), 노인일자리 등

※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(예: 자원봉사 활동비, 커뮤니티 지원금 등)은 일로 인정하지 않음. 단, 단체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여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, '프리랜서'의 개념으로 '기타'로 인정함

□ 일 연계 유형별 구분

일 연계 형태	일 연계 유형	정의		4대보험 여부				
할 언제 왕대				고용	건강	산재		
	정규직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형태(전일제)	Ο	0	Ο	Ο		
	무기계약직	기간 정함이 없는,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고용직으로 채용	0	0	Ο	Ο		
취업	기간제계약직	기간이 최대 2년 미만의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근로자	Ο	0	0	Ο		
(고용보험 가입만 해당)	특수고용직 (고용보험 가입)	형식상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로, 노동자처럼 사업주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자	X	0	X	Ο		
	파견직	근로자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는 근로자 사업		사업체/파견기업마다 상이				
	파트타임 (고용보험 가입)	소속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	X	0	X	0		
	프리랜서 (2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프리랜서 체크)	소속 사업장이 없으며,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 (대가도 일급으로 수령)						
		회사나 집단에 근로계약 되지 않고, 자유계약에 의한 반복적 근무	예: 시간제 강사 등					
기타 (고용보험	재단 일자리사업 참여 고용보험 미가입. 수입이 발생(활동비·인건비 지원)하는 재단 일자리 사업		예: 서울시 보람일자리 4050인턴십(파트타임)					
미가입 해당)	타기관 일자리사업 참여 고용보험 미가입. 수입이 발생(활동비·인건비 지원)하는 타기관(정부/지자체) 일자리 사업		예: 여성새일인턴					
	파트타임 (고용보험 미가입)	소속 사업장에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						
창업	사업자등록(고유번호증) 발급 자							